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-2838호

**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청문조서 열람·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**

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83조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조합 사업장폐쇄 및 대표자 연락두절, 수취인부재,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조합에 대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(공시송달)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·확인 관련 사항을 통지하오니 희망하시는 청문 당사자(대표자)께서는 기한 내 청문조서를 열람·확인 및 정정 신청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일  
서울특별시

1. 청문 당사자(조합)

| 연번 | 인가번호               | 조합명                | 조합 소재지               | 대표자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  | 서울특별시<br>제2011-19호 | 참소망의료<br>소비자생활협동조합 |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, 2층 | 강병용 |
| 2  | 서울특별시<br>제2012-8호  | 서현의료<br>소비자생활협동조합  |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일로 680    | 이영미 |

2. 청문개최 사유(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)

- (참소망, 서현)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정지
- (서현) 보건·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- ※ 「의료법」 위반 내용 : 정당한 사유없이 「의료법」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(「의료법」 제64조 제1항 제5의2호)

3. 청문조서 열람·확인 장소 :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,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

4. 열람·확인 및 정정기간 : 2025. 11. 3.(월)까지

5. 관련법령

- 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(청문조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청문조서의 열람 등)

6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경제과(담당자 ☎02-2133-536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3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## 청문조서 정정요구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당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(명칭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|
|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정정 요구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<p>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당사자등 성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p> |         |
| ※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